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5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자원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정비

나. 기금용도에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안 제4조제8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안 제10조제5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8조에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현행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 함.

- 안 제4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법 제71조제3항과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를 1호부터 10호까지 각 호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어 주고 제8호에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함.
 - 안 제10조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함.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어 줌으로서 구민들이 해당 조문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한눈에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학교주변 업소의 위생향상을 위하여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자원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 한 개정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 지며

-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